

「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(안 제5조)
- 마.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바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3. 29. ~ 2024. 4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실종자”란 약취·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
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
2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방·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
2.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
3.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
4.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
5.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 사업)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
2.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
3.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
4.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비용 지원)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, 경찰서,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게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